

부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3월 1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3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3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제안이유

-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내 장애인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운동시설 별로 설치기준 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시·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통로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 장애인용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함.(안 제6조)
- 기존의 공연장 등은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2년간 유예하도록 함. (안 부칙제2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무조건 장애인관람석을 지정하는 것이 애매하고, 문안이 광범위하며 설치기준 50% 이상을 장애인용으로 하는 것 등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p> <p>○ 경기도 준칙안을 참고로 부천시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p>	<p>○ 경기도 준칙안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p> <p>○ 일반적으로 상부기관의 준칙안에 의해 조례를 만들고 있으며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55호
의결 년월일	2005.3.24 (제118회)

제출년월일 : 2005. 3. 1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내 장애인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운동시설 별로 설치기준 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나. 시·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 다.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통로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장애인용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기존의 공연장 등은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2년간 유예하도록 함.(안 부칙제2항)

부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 및 운동장중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관리(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안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각 공연장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등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